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은 불법무효한 유령선

박 희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 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 으로 번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현시기 불법무효한 《북방한계선》을 고수유지하려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의 무모한 침략책동은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그로 하여 조선서해는 군사적긴장이 항시적으로 떠도는 최대의 열점수역으로 되고있다.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가 조선전쟁직후 우리의 신성한 령해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유령선으로서 법률적 및 력사적견지에서 볼 때 완전히 불법무효하다.

《북방한계선》이 법률적견지에서 불법무효한 유령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의 요구에 완전히 배치되는 계선이기때문이다.

조선정전협정은 군사행동의 일시적중지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다른 정전협정과 달리 적 대적군사행동의 완전중지와 평화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전협정으로서 쌍방사이의 군사분 계선확정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조선정전협정에서는 륙지에서의 군사분계선을 정전협정체결당시 쌍방사이의 접촉선으로 규정하는것과 함께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도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정전협정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조치) 13항 L목에서는 황해남도와 경기도의 도계선북쪽과 서쪽에 있는 섬들가운데서 백령도(북위 37° 58′, 동경 124° 40′), 대청도(북위 37° 50′, 동경 124° 42′), 소청도(북위 37° 46′, 동경 124° 46′), 연평도(북위 37° 38′, 동경 125° 40′) 및 우도(북위 37° 36′, 동경 125° 58′)를 제외한 모든 섬들을 우리측의 군사통제밑에 둔다는것과 이 경계선의 남쪽에 있는 섬들을 《유엔군》측이 관할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정전협정의 이 규정에는 크게 세가지 내용이 반영되여있다.

그것은 첫째로, 조선서해의 해상군사분계선이 황해도와 경기도의 륙지경계선의 연장선으로 된다는것이며 둘째로, 이 해상분계선의 북쪽수역이 우리측의 군사통제수역으로, 남쪽수역은 《유엔군》측의 군사통제수역으로 된다는것이며 셋째로, 우리측 수역에 있는 섬들가운데서 5개의 섬들만 《유엔군》측이 관할한다는것이다.

조선서해에서의 해상군사분계선을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미군측의 통제밑에 있는 5개의 섬이 모두 우리측 령해에 있다는것을 법적으로 규 정한 이 조항은 본질상 서해해상과 관련한 모든 문제해결의 기초를 이룬다. 조미쌍방사이 의 해상분계선과 군사통제수역이 정전협정에 의하여 이미 명문화된 조건에서 어느 당사자 도 그것을 어길 권리가 없으며 오직 정전협정에 따르는 요구를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만을 지닌다.

그러나 미국은 쌍방사이의 군사분계선설정과 관련한 조선정전협정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 묵살하고 자의대로 조선서해상에 정전협정에도 없는 《북방한계선》이라는 날강도적인 《계선》을 그어놓고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닌 남조선괴뢰당국까지 꺼들여 이 수역에 대한 관

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와 남조선괴뢰당국에 의한 《북방한계선》고수책 동이 적대적군사행동의 재개를 방지할 목적으로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란폭한 유린인 동 시에 우리의 합법적령해와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북방한계선》이 법률적견지에서 불법무효한 유령선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바다수역설정과 관련한 국제법의 보편적요구마저도 무시하는 계선이기때문이다.

《북방한계선》은 우선 령해너비의 설정과 관련한 국제해양법상의 요구에 완전히 배치되는 불법무효한 유령선이다.

모든 국가는 국제법적요구와 자기의 정치군사적리해관계를 고려하여 령해너비를 자주적으로 결정할수 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매개 국가는 다른 국가들의 령해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1982년에 채택된《유엔해양법협약》제2장(령해와 접속수역) 제3조에서는《매개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확정된 기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12n·mile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령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국가들의 령해너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주는 규정으로서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있다. 이러한 국제법적요구로부터 남조선괴뢰당국까지도 저들의 《령해 및 접속수역법》이라는데서 《12n·mile 령해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은 공화국연안으로부터 불과 3n·mile안팎에 즉 우리 공화국의 령해내에 설정되여있다. 이것은 《북방한계선》이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령해권을 부정하는 불법적이고 무효한 계선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남의 령해내에 저들의 리해관계에 따르는 다른 수역을 설정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부여되여있지 않으며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국제법에 대한 유린이다. 설사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령해권을 존중하여야 할 국제법적의무를 지니고있는것이다.

《북방한계선》은 또한 린접국가들사이의 수역설정과 관련한 국제해양법상의 요구에도 완전히 배치되는 불법무효한 유령선이다.

《유엔해양법협약》제15조에는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하고있거나 린접하고있는 경우에 그들사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두 국가들중 어느 한 국가도 자기의 령해를 이 매개 국가들의 령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산선들상의 가장 가까운 점들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점들을 련결하여 이루어진 중간선너머에 확대할수 없다.》라고 규정되여있다.

이 조항에는 린접하고있는 국가들사이의 령해가 1차적으로는 합의에 의하여 설정되여야 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2차적으로 등거리선원칙에 의하여 설정되여야 한다는 법적요구가 반영되여있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정전상태라는 특수한 상태에 놓여있고 교전일방의 령해안에 상대방이 관할하는 섬들이 있는것과 같은 복잡한 수역에서의 경계선을 합의의 방법으로 설정되여야 한다는것은 국제관습법에 의하여서도 공인되여있다.

그러나 《북방한계선》은 우리와 미국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우리측과의 정전담판 전과정에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정전직후 《북방한계선》을 설정하면서도 그것을 우리와 합의하자고 제기한적이 없다. 더우기 미국은 《북방한계선》설정문제에 대하여 교전일방인 우리측에 통지조차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방한계선》을 조작하면서 국제법상 공인된 등거리선원칙이나 공정성의 원칙 도 완전히 무시한채 그것을 우리측 령해깊이에 설정하였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 날조해낸 《북방한계선》이 린접국가와의 경계선확정에서 준수하여 야 할 국제법의 가장 초보적인 요구마저도 유린하고있는 날강도적인 계선이라는것을 뚜렷이 증명해준다.

《북방한계선》은 또한 력사적견지에서 볼 때에도 절대로 인정될수 없는 유령선이다.

《북방한계선》은 그 설정경위를 놓고보아도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당시《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 개인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그어진《월선금지한계선》이다.

이 시기 리승만역도는 《유엔군》이 관할하는 5개의 섬이 우리측 령해내에 있는 특수한 환경을 리용하여 서해해상에서 북침전쟁을 계속하려고 발광하였다. 한편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던 남조선의 령세어민들이 평화로운 우리측 수역깊이까지 들어와 고기잡이를 하였는가 하면 미제의 식민지지배에 항거해나선 많은 남조선인민들이 서해상의 배길을 리용하여 공화국의 품으로 의거입북하였다.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류례없는 참패를 당하고 지칠대로 지친 미제는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로 인한 전쟁재발로 하여 또다시 우리에게 패전할것이 두려워 당시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 피하며 공화국으로 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입북길을 차단할 심산으로 클라크를 내세워 조선서해해상에 《북방한계선》(일명 《클라크라인》)이라는 차단계선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북방한계선》은 그 명칭조차도 교전당사자들사이의 군사통제수역을 구분하는 선이라는 의미에서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혹은 서해해상군사경계선으로 명명되지 못하고 북으로 접근할수 있는 최종계선이라는 의미에서 《북방한계선》이라는 비군사적의미로, 애매한 표현으로 명명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세상에 공개 하지 못한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북방한계선》은 력사적으로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자체내에서도 부정되여온 유령선이다. 정전협정체결이후 오래동안 미군측 함선들은 우리측에 있는 5개 섬에 드나들 때에는 멀리 공해로 에돌아다녔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섬들이 우리측의 령해내에 있으며 이 수역에 대한 군사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한다는것을 미국도 인정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

1973년 12월 당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는 자국정부에 보낸 전보문에서《〈북방한계선〉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많은 나라들은 남조선과 미국이 옳지 않은것으로 간주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같은해 12월 미국무성과 국방성이 공동으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에 보낸 전보문에서도《남조선이 북조선에〈북방한계선〉을 강제로 접수시키는데 미국이 동의할 것이라고 가정하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 미국무장관이였던 키신져는 1975년 2월 한 비밀전보문에서《〈북방한계선〉은 일방적으로 그어지고 북조선에 의해 접수되지 않은것》이라고 하면서《〈북방한계선〉이 국제수역을 일방적으로 분할한 이상 그것은 국제법에 위반되는것》이라고 함으로써《북방한계선》의 합법성을 부정하였다.

1980년에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진행된 유엔해양법회의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조선서해해상의 《북남가상등거리선》을 지금의 《북방한계선》보다 훨씬 남쪽에 그었다. 이것은 미국자체가 《북방한계선》을 부정하고 그것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것을 인정한것으로 된다.

1996년 7월 당시 남조선피뢰들은 《국회》에서 《북방한계선》은 어선보호를 위해 미국 측이 그어놓은것이므로 북측이 넘어와도 정전협정위반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북방한계선》 이 정전협정에 위반된다는것을 명백히 밝혔다. 1999년 6월 17일 미국무성대변인은 서해사 건과 관련하여 《북방한계선》은 공식적으로 인정된적이 없으며 때문에 인민군함선들이 《북 방한계선》을 넘는다고 하여도 령해침범으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북방한계선》의 존 재를 부정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유엔군사령부》측 수석대표 특별고문으로서 1966년부터 1994년까지 28년간이나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 참가하였던 리문항은 2007년 10월에 진행한 미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방한계선》은 합의된 해상경계선이 아니라《배들이 더 이상 북쪽으로 갈수 없도록》하기 위하여 《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한계선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는 정전협정체결당시에는 물론 그 이후 1990년대초까지의 수십년간에 걸치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방한계선》문제가 한번도 론의된적이 없으며 심지어 조선인민군해군 함선들이 《북방한계선》을 넘나들어도 그것을 《정전협정위반》이라고 한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군사정전위원회의 모든 문건을 찾아보아도 〈북방한계선〉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주〈한〉미해군사령부를 찾아가 기록을 들여다보고서야 〈북방한계선〉이 해군의 작전통제선이라는것과 〈한국〉해군선박뿐아니라 어선들도 통제하는 한계선이라는것을 알았다.》라고 주장하였다.

《북방한계선》을 부정하는 견해는 미국과 남조선의 학계에서는 물론 고위당국자들속에 서까지도 계속 나오고있다.

이러한 력사적사실들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이 집요하게 고집하는 《북방한계선》이 그들자체에 의해서도 인정되지 않은 부당한 《계선》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북방한계선》은 력사적으로 채택된 북남관계 문건들에 의해서도 인정되지 않은 불법 무효한 유령선이다.

남조선괴뢰당국은 마치도 《북방한계선》이 북남관계 문건들에 의하여 인정된것처럼 떠벌이면서 그 고수를 요란스레 떠들고있다. 그러나 10.4선언을 비롯한 북남관계 문건들에서는 《북방한계선》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여 이 수역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것을 규정하고있다.

1991년 12월에 채택된《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 2장 제11조에서는 《북과 남의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92년 9월에 채택발효된《〈북남합의서〉의〈제2장 북남불가침〉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장 제10조에서도《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문건들에 규정된《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이라는 문구에는《북방한계선》이 불법무효하므로 그것을 인정할수 없으며 따라서 쌍방의 관할구역을 정전협정에 따라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우리 공화국은 지금까지 《북방한계선》을 인정한적이 없으며 실제적인 행동으로 서해 해상의 북쪽수역에 대한 군사통제권을 행사하였다. 때문에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 역》이라는 표현은 본질에 있어서 서해해상의 북쪽수역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우리측 에 속한다는 의미로 리해된다.

《〈북남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5장 제20조에서는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이 조항에는 《북남합의서》도 정전협정에 대한 리행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을뿐 《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는 그 어떤 의미도 없다.

2007년 10월 4일에 발표된 력사적인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는 조선서해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할데 대한 문제를 규제하고있다. 이것 역시 조선서해에 비법적으로 존재하는 《북방한계선》자체의 불법무효성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철회하는 기초우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할것을 확약한 규정이다.

10.4선언과 《북남합의서》를 비롯한 모든 북남관계 문건들에는 《북방한계선》을 인정한다는 표현은 전혀 없으며 그것들은 오히려 불법적인 《북방한계선》으로 하여 야기된 조선서해해상에서의 복잡한 군사분계선설정문제를 협의의 방법으로 정확히 해결해나가자는 약속을 담고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당국은 마치도 북남관계 문건들이 《북방한계선》을 궁정하기라도 한것처럼 사실을 외곡하여 선전하고있다.

북남관계 문건들에 대한 남조선괴뢰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그에 기초한《북방한계선》 고수주장은 북남공동합의의 경위와 의미조차 무시하는 무지의 표현이며 민족앞에 다진 서약을 집어던지고 조선서해를 또다시 대결과 충돌, 전쟁의 도가니속에 몰아넣으려는 반민족 적행위이다.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한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으로 하여 이 수역에서 초래되는 군사적충돌을 막기 위하여 서해해상군사분계선문제를 정전협정에 따라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미국이 불법무효한 《북방한계선》유지를 계속 고집하는것과 관련하여 공화국은 우리의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1999년 9월 2일 조선서해해상군 사분계선을 설정한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주어진 선인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가-나선)의 《가》점과 우리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 미군측 관할의 섬인 굴업도사이의 등거리점(북위 37° 18′ 30″, 동경 125° 31′ 00″), 우리측 섬인 옹도와 미군측 관할의 섬들인 서격렬비도, 소협도사이의 등거리점(북위 37° 1′ 12″, 동경 124° 55′ 00″) 그리고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북위 36° 50′ 45″, 동경 124° 32′ 30″)을 지나 우리 나라와 중국과의 해상경계선까지 련결한 선이다.

우리 공화국이 선포한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륙지경계선의 연장선을 서해해상군사분계선으로 할데 대한 조선정전협정의 요구와 바다수역설정에서 등거리선원칙을 적용할데 대한 국제법의 보편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합법적인 선이다. 때문에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이 선포되자 다른 나라의 언론들은 물론 남조선언론까지도 우리가 설정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과 관련하여 《등거리선원칙에 립각한 국제법으로만 따질 경우》에도 타당성이 있으며 《이를 반박할 대응책이 남조선정부와 군부에는 없다.》라고 평하였던것이다.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설정에 관한 우리 공화국의 조치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이 일 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무효화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 한 지극히 정당한 자위적조치였다.

우리는 《북방한계선》의 불법무효성을 옳바로 인식하고 미제와 남조선피뢰당국의 《북 방한계선》고수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림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자 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할것이다.